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제35회 임시이사회 회의록

2019. 10. 2(수) 11:00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제35회 임시 이사회

- 일 시 : 2019년 10월 2일(수) 11:00
- 장 소 : 서울장학재단 회의실
- 재적이사 : 총 11명
- 출석이사 : 총 7명
- 출석감사 : 1명

사무국장이 제35회 임시이사회에 성원을 보고하다.

이사장이 인사말에 이어 안건을 간단히 설명하고, ○○○ 사무국장이 미리 배포된 회의자료를 통하여 주요보고안건에 관하여 설명하다.

- 보고안건**
1. 전차 이사회 회의보고
 2. 재단 운영 보고
 3. 장학사업 추진 현황 보고

보고사항이 완료되어 이사장이 다음 안건에 관하여 심의를 구하다.

제194호 인사규정 개정예 건

이사장이 제194호 인사규정 개정예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 조직지침」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기준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근무 제한 강화」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내용을 반영하여 인사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주요내용은 형법 제303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등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재단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제13조(결격사유)제10호 신설,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제33조(휴직기간)제4항 신설, 당연 퇴직에 제13조 채용 결격사유의 각 항목을 포함하도록 제37조(당연퇴직)제3호 신설,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계하도록 제48조(징계양정기준)제2호 개정 및 별표 2의 2(음주운전 징계기준) 신설, 음주운전, 성매매, 성희롱 비위 행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제48조(징계양정기준)제4호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다.

○○○ 이사가 관련 지침 및 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한다.

이사장이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4호 인사 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195호 복무규정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이 제195호 복무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재단의 일·생활 균형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하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으로 시간외 근무시간 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9조(근무시간)제1항 및 제3항, 제10조(시간외 근무)제1항 개정, 유연근무제 실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제9조의2(유연근무제) 신설, 직원의 일과 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을 위해 제22조(연가계획과 허가)제4항 삭제 및 제22조의 2(연가의 사용촉진) 신설하고자 하며, 제26조(특별휴가)와 관련하여 경조사 휴가 일수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제1항과 일치하게 운영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의 출산휴가 10일 규정을 반영하여 제1항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개정하고자하며, 제2항에서 제5항 제1호 및 제3호의 『여자직원』을 『여성근로자』로 용어를 정비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수유시간 부여할 수 있도록 제4항 개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단축(제9항),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정기건강검진휴가(제10항), 근로자의 “난임 치료휴가”(제11항), 만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 대상 “장기근속자 휴가”(제12항), 자녀의 학교공식행사 참여 등을 위한 “자녀 돌봄 휴가”(제13항), 취학 전 아동의 자녀보육을 위한 “부모휴가”(제14항) 및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26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설하고자 한다고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다.

○○○ 이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도입되면 직원들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묻다.

○○○ 사무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현재는 3일까지 보상하고 있으며, 재단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직원들은 연차휴가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 이사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보면 근로기준법보다 직원에게 유리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여 지므로 서울장학재단은 시 산하기관이므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및 근로기준법 등을 근거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한다.

○○○ 이사가 장기근속휴가 사용 방법에 대하여 묻다.

사무국장이 장기근속휴가 사용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하다.

이사장이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5호 복무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196호 물품관리규정 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이 제195호 물품관리규정 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재단 물품의 분실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하고 정기재물조사를 통해 적절한 물품 관리를 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과 타 시 출연기관의 규정을 검토하여 재단의 규모에 맞게 물품관리 규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1조~제8조는 물품의 범위, 물품관리체계, 물품의 구분, 물품관리 장부 비치에 관한 사항, 제9조~제10조는 물품 관리의 방법,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3조는 물품 구매, 발주, 조달 순위의 결정, 취득한 물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7조는 물품의 출납, 보관, 물품의 관리전환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18조~제23조는 불용물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불용결정의 절차, 불용품의 처분, 처분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제24조~제26조는 정기재물조사, 특별재물조사, 재물조사 결과분석에 관한 사항, 제27조~제29조는 손망실 보고 및 처리, 손망실 및 훼손에 대한 책임의 한계에 대한 사항이라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다.

○○○ 이사가 규정은 제정하면 시행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현재 관리되고 있는 업무의 프로세스와 모순되는 점은 없는지 잘 검토하여 시행 해본 후 최종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므로 금번 이사회에서는 의결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다.

이사장이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6호 물품관리규정 제정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보류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이사장은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2019년 10월 2일